의안번호	제682호
의 결	2024년 9월 11일
연 월 일	(제420회)

#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안연월일	2024년 9월 2일

###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**682**  제안연월일 : 2024년 9월 2일 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장

#### 1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의 장기근속·퇴직 공직자 대상 일률적 지원 관행 개 선권고(2021. 4. 12. 의결)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(삭제)하고,
- 후생복지사업을 명확히 하고,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#### 2. 주요내용

- 용어 정비(안 제2조, 제5조, 제8조)
  - 선택적→맞춤형,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 준용
- 후생복지사업 명확화(안 제7조)
  - (삭제) 장기근속 공무원 및 그 가족 대상 국내외 시찰 일률적 지원 규정
  - (신설) 소속 공무원의 생일 선물, 건강검진비, 단체보험비, 예방접종 지워 등 근거 규정 명확화
- 3. 조례안(개정조례안) : 붙임

#### 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붙임

○ 관련부서 협의 : 해당없음

○ 비용추계 : 해당없음

#### 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##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3호 중 "선택적"을 "맞춤형"으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"(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)"을 "(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"선택적"을 각각 "맞춤형"으로 한다. 제7조제5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7호를 제10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7. 소속공무원의 생일 선물 제공
- 8. 소속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생활보장을 위한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비 지원
- 9. 소속공무원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제8조제1항 중 "선택적"을 "맞춤형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언 앵	개 경 단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·.
1. • 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3. " <u>선택적</u> 복지제도"란 사전에 설	3 <u>맞춤형</u>
계된 다양한 복지항목중 공무원	
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	
위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	
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	
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.	
제5조(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) ①	제5조(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) ①
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	
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	
도록 <u>선택적</u> 복지제도를 시행하여	<u>맞춤형</u>
야 한다.	
②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	② <u>맞춤형</u>
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	
제7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 의장은	제7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
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	
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	<del></del> 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장기근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	<u>&lt;삭 제&gt;</u>
대상으로 한 국내・외 시찰	
6. (생 략)	6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7. 소속공무원의 생일 선물 제공

현 행	개 정 안
<u> &lt;신 설&gt;</u>	8. 소속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
	리와 생활보장을 위한 건강검진
	비 및 단체보험비 지원
<u>&lt;신 설&gt;</u>	9. 소속공무원에 대한 예방접종
	<u>지원</u>
<u>7</u> . (생 략)	<u>10</u> . (현행 제7호와 같음)
제8조(운영) ① 「지방공무원법」	제8조(운영) ①
제77조제1항 후단에 따라, 의장은	
충청북도지사와 협의하여 소속 공	
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<u>선택</u>	
<u>적</u> 복지제도를 통합 운영할 수 있	<u>형</u>
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## 관련법령 발췌

#### □ 지방공무원법

제77조(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·휴양·안전·후생,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,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5. 18., 2021. 10. 8.>
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(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)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7. 20., 2021. 10. 8.>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, 그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 <신설 2015. 5. 18., 2021. 10. 8.>
-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, 방법,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<신설 2015. 5. 18.> [전문개정 2008. 12. 31.]

#### □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

- **제2조(정의)**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9. 9. 8., 2013. 6. 21.>
- 1. "맞춤형 복지제도"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

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.

- 2. 삭제 <2013. 6. 21.>
- 3. 삭제 <2013. 6. 21.>
- 4. 삭제 <2013. 6. 21.>
- 5. 삭제 <2013. 6. 21.>
- 6. 삭제 <2013. 6. 21.>
- 7. 삭제 <2013. 6. 21.>
- 8. "운영기관의 장"이란 「공무원임용령」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**제3조(적용범위)** ① 이 영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 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 <개정 2013. 6. 21.>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6. 21., 2014. 11. 19.>
- 1. 휴직 중인 공무원
- 2.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
- 3.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
- 4.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의 후생복지 제도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. <신설 2020. 3. 10.>
- ④ 운영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그 기관에 근무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20. 3. 10.>